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순서

□ 5분 자유발언 : 5명

- 이흥희 의원 : 지역의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하여
- 신미정 의원 : 공감 할 수 있는 조형물 행정을 바란다
- 표주숙 의원 : 반려동물 친화도시, 펫 에버랜드 거창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 김홍섭 의원 :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 김향란 의원 : 보전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전환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고자 : 김혜숙 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6건(조례안 6)
- 보고자 : 신미정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0건(조례안 7, 일반의안 3)
- 보고자 : 김향란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1건(조례안 4, 일반의안 7)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의 사 일 정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 10.(수)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p>【제3차 본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9.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19.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2.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2</p> <p>※ 의회운영위원회 : 3~8</p> <p>※ 총무위원회 : 9~18</p> <p>※ 산업건설위원회 : 19~29</p>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 10.(수)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2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30.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산 회】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 09. 10. 10:00)

5분 자유 발언

지역의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하여



이 홍 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 홍 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거창군이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우수한 자연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지역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창업생태계 전략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거창군의 자산과 특성에 맞춘 전략적 임팩트 투자 플랫폼으로, 실제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펀드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R&D 기반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통영시는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거제시는 청년 마을과 장기체류형 관광 사업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센터」와 연계한다면, 청년 창업을 유도해 인구 유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맞춤형 투자는 단순히 기업에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착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세수 기반이 커지고, 도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의 매칭으로 구성되어, 준비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인구 감소, 고용 위기, 산업 공동화는 단기적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 모델이 필요하며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지자체, 청년이 떠나는 것을 막고, 거창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지자체 그 중심에 우리 거창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이 전략적인 펀드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 09. 10. 10:00)

5분 자유 발언

‘공감’ 할 수 있는 조형물 행정을 바란다



신 미 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창군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조형물들은 거창의
얼굴이자 상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창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지역성과는 무관하며 심지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마리면에 설치된 말 조형물은
한자로 ‘말 마’ 자를 쓴다는 것 외에
역사적 연관성이 전혀 없고,

수승대 셰익스피어 동상도 연극제가 열린다는 것이 설치 의도라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산림레포츠파크에 설치된 손 모양 조형물도 지역적 특징이 없는 그저 따라 하기에 불과한 조형물입니다.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거창 IC 관문 개선사업으로 톨게이트 위에 설치된 산 모양 조형물은 1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설치 초부터 고장이 났었고, 지금은 아예 전체가 고장 나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조형물은 13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내부 화면은 이미 보이지 않고, 뒤늦게 습기 문제로 설치한 환기창 때문에 괴기스러워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창 군민으로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된 지 오래인데, 이렇게 훼손된 조형물을 원형 복구하려면 또다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창군이 ‘랜드마크’ 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면서 조형물을 조성했지만, 정작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톨게이트 위 조형물은 ‘거창군의 자연경관인 산과 계곡을 표현하며, LED영상과 조명을 통해 자연과 함께 희망찬 미래 거창을 상징한다’ 고 설명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 조형물은 설치 의도조차 찾기 힘들어 거창의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대동 회전교차로 조형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거창을 담다’, ‘사과’, ‘넓은 들판’, ‘군민 단합’, ‘지역 산업과 자연환경’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군민들에게는 그저 분수대 위에 스테인리스 공 하나 얹어놓은 구조물로 보일 뿐입니다.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이라면 해석에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이 설치한 공공 조형물은 명확한 의미와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설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형물은 예산의 낭비일 뿐입니다.

행정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조형물이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거나
관광자원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회전교차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비움’의 미학 혹은 실용성, 안전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던 조형물 문제,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가 목적이 아닌,
‘공감과 가치’가 있는 조형물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 09. 10. 10:00)

5분 자유 발언

**반려동물 친화도시, 펫 에버랜드
거창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표 주 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침체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거창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우리 군이 잠시 추진하다 현재는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모를 더 키운, 반려동물 친화도시 추진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가족’이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이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경비를 아끼지 않고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공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기대 이상의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카페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공원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는 이미 많은 보석 같은 관광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포원의 아름다운 꽃과 정원, 감악산 별 바람 언덕의 노을, 고제 산림레포츠파크의 짜릿한 체험, 위천 수승대의 맑은 물,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숲, 가조 Y자 출렁다리와 온천까지.

여기에 반려동물공원의 콘텐츠까지 더해진다면 관광분야의 생활인구 증대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거창’을 찾아 숲캉스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찾아드는 용인 에버랜드처럼 본의원은 이를 ‘거창 펫 에버랜드’라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놀고, 함께 캠핑하며, 가족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복합형 테마공원 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지만, 거창의 기존 관광 명소들과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읽고,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반려동물공원은 우리 거창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도 분명히 이바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과감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군이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우리 거창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 09. 10. 10:00)

5분 자유 발언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김 홍 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군 연구용역 사업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개발과 조사·분석을 위하여
거창군에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연구용역만 260건, 1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용역 수요에 대한 기획과 사전심의,
용역 집행 과정,
용역 결과 활용과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용역을 설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용역 남발’, ‘예산 낭비’, ‘사업 지연’ 이
초래될 수 있고, 용역 필요성과 목표, 성과지표
마련이 미흡하여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심의 위원회는 전문가 비율이 낮고 참석이
저조하며, 서면심사 중심의 운영상 문제점도
존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용역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 연계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본 의원은 용역 결과에 대한 공유와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를 살펴보면,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규정과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에서 2023년 사이 공무원들 상호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새을 게시판마저 공개 실적은 전무하였습니다. 최근 완료된 용역도 63%만 공개가 되었고, 공개 시점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물론 의회, 공직 내부에서조차도 공유되지 않아 용역 결과물이 부서를 초월해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용역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거창군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용역결과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모든 용역의 목적·비용·성과를 군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 활용 강화입니다. 용역 결과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책 개발과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문가 참여와 실질적인 운영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용역 남발과 케비넷 용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과 중심·활용 중심의 용역 문화』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사업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 기획부터 집행·활용·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 09. 10. 10:00)

5 분 자 유 발 언

**보전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전환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김 향 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운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구인모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 향 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거창군은 올해 청년의 날이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3곳만 지정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판을 청사 입구에 걸고 크게 축하할만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한편,청년 귀농인과 귀촌인 및 청년 임업인도 다소 증가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1차산업 종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은 주5일제를 넘어 4.5일제로 변화 과정에 있는 만큼 6차산업 관련 임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년들과 귀농인들 산림 후계자들이 소유한 산지에서 생산한 임산물과 농산물을 가공 및 유통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과 수질, 생태 보전을 위해 개발 제한에 묶이고 용도지역을 보면 활용도가 낮은 보전관리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농업, 임업 1차적인 생산에 그쳐야 하는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 용도지역 자료를 보면 농촌인지라 농림 지역 57퍼센트, 관리지역 33퍼센트, 자연환경 보전지역 5.5퍼센트, 도시지역 4.5퍼센트이며, 이 가운데 관리지역만 살펴보면 보전관리지역이 22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0퍼센트, 생산관리 지역은 1퍼센트입니다.

가공과 체험 유통 인프라가 가능한 생산관리는 단 1퍼센트 밖에 안되고 보전관리가 대부분이며, 보전관리지역은 규제로 인해 가공, 체험, 판매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가공이 가능한 시내까지 싣고 나와야 하고 제품화하면 다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담과 원물의 품질 저하 문제 등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해 임업/농업/관광/체험을 융합한 6차산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임산물·농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귀농/귀촌 청년 창업 공간 확보하여 6차산업 가공·체험 거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6차산업 연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확대이며 활용 방안으로 사과, 딸기, 산양삼, 고로쇠, 호두, 잣 등 농·임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온라인 판매센터 공동 집하장을 세울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체험·관광형 6차산업 모델 활용 방안으로 생산관리지역 전환 후 체험관, 치유농업 트리하우스, 산림 휴양체험장, 농가 맛집, 카페, 직판장 같은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추진 전략 및 절차는 먼저 수요 조사 기반한 명분을 강화하고 임업인, 6차산업 업체, 귀농·귀촌 청년 데이터 확보하여 전환의 필요성을 통계로 설명하고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시범 전환지로 선정하여 가공센터와 체험관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

조성하고 정책사업으로 연계하여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및 가공 창업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해 가공·체험·판매 결합, 고수익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하고 창업·체험·관광형 단지 활성화 온라인 유통 연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근 함양군 안의면의 경우 약 70% 이상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 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규모화된 농지, 임야의 경우 생산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구석구석 농촌 융복합으로 농업 경쟁력이 커지길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1
2. 세입예산안 대비표	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2
4. 심사결과	3
5. 변동조서	3
6. 조건부 승인조서	4

II .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 심사경과	5
2. 제안사유	5
3. 근거법령	5
4. 기금운용 변경계획	6
5. 질의 및 답변 요지	9
6. 토론 요지	9
7. 수정안 요지	9
8. 심사결과	9
9. 소수의견 요지	9
10. 기타 필요한 사항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9. 9. 상정·의결)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22,608,962	812,826,663	9,782,299	1.20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787,764,081	779,990,203	7,773,878	1.00
	지방세수입	40,982,547	40,982,547	0	0.00
	세외수입	24,779,777	24,149,777	630,000	2.61
	지방교부세	321,717,000	319,104,000	2,613,000	0.82
	조정교부금등	29,515,000	29,110,000	405,000	1.39
	보조금	257,630,658	239,435,670	18,194,988	7.60
	보존수입등내부거래	113,139,099	127,208,209	△14,069,110	△11.06
공기업특별회계	34,844,881	32,836,460	2,008,421	6.12	

3. 세출예산안 대비표

가.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계	822,608,962	812,826,663	9,782,299	1.2
일반회계	762,744,761	751,269,429	11,475,332	1.53
특별회계	59,864,201	61,557,234	-1,693,033	-2.75
기타	25,019,320	28,720,774	-3,701,454	-12.89
공기업	34,844,881	32,836,460	2,008,421	6.12

나. 위원회 및 회계별

(단위 : 천원)

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계	822,608,962	812,826,663	9,782,299	1.20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계	787,764,081	779,990,203	7,773,878	1.00
	의회운영위원회	1,301,197	1,301,197	0	0.00
	총무위원회	450,657,404	454,092,635	-3,435,231	-0.76
	산업건설위원회	335,805,480	324,596,371	11,209,109	3.45
공기업특별회계	34,844,881	32,836,460	2,008,421	6.12	

4. 심사 결과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1건에 대해 1,000,000천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5. 변동 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감액)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계					1건	3,040,000	▲1,000,000	2,040,000		
1	건설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영주차 장조성	401-01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40,000	▲1,000,000	2,040,000	도비확보 에 따른 준비감액	297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6. 조건부 승인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 해당 없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9. 9. 상정·의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 ①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⑤=④+③
		수입②	지출③	증감 ④=(②)-③	
계	63,539,358	2,168,670	42,200,000	△40,031,330	23,508,028
재정안정화계정	51,414,810	364,629	41,000,000	△40,635,371	10,779,439
통합계정	12,124,548	1,804,041	1,200,000	604,041	12,728,589

2) 수입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51,779,439	51,779,439	0	
공공예금이자수입	364,629	364,629	0	
예치금 회수	51,414,810	51,414,810	0	
기타회계전입금	0	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3,928,589	12,517,630	1,410,959	
공공예금이자수입	393,082	393,082	0	
예치금 회수	12,124,548	12,124,548	0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410,959	0	1,410,959	

3)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51,779,439	51,779,439	0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0,779,439	10,779,439	0	
일반회계 전출금	41,000,000	41,000,00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3,928,589	12,517,630	1,410,959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예치금	11,228,919	11,228,919	0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88,711	88,711	0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1,410,959	0	1,410,959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200,000	1,200,000	0	

나. 고향사랑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 ①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② = ① + ④
		수입②	지출③	증감 ④ = ② - ③	
고향사랑기금	842,509	360,034	217,991	142,043	984,552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202,543	1,166,108	36,435	
공공예금이자수입	2,273	2,038	235	
기타이자수입	35	35	0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7,926	7,926	0	
기부금 수입	349,800	313,600	36,200	25년 하반기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예치금 회수	842,509	842,509	0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202,543	1,166,108	36,435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예치금	984,552	981,108	3,444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	30,000	30,000	0	
거창 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	35,000	35,000	0	
고향사랑 공연개최	100,000	100,000	0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21,951	0	21,951	
거창형 야간약국 지원사업	11,040	0	11,040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조례 · 규칙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4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5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6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29

거창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시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등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에 적용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2) 연구단체 구성과 등록·심의 (안 제3조, 안 제4조)
- 3) 위원회의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 (안 제5조 ~ 안 제7조)
- 4)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안 제9조)
- 5)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안 제10조)
- 6)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안 제11조)
- 7)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안 제12조)
- 8) 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에 따라 운영중인 연구단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임.
- 조례안 제4조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할 수 있으며,
- 정책연구용역은 일반 연구활동 대비 예산 규모가 크고,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에 부패 개입 여지가 많으므로 조례안 제

8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안 제10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패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음.

-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
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을 두어 연구활동의 책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음.
-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과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8조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및 변경
2.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40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2. 현장 방문 등을 위한 차량 및 인력 지원

제7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 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촉직 위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의원인 위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 심사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완료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① 연구단체의 존속 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 중인 연구단체와 시행중인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의 연구활동 및 예산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

거창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 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 실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용 통일성을 제고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적 명시(안 제8조의2)
-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 신설(별표 1)
-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2)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2) 3만원 → 5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조례 개정안은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징계대상 위반행위 명시(안 제8조의2)
 -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 신설(별표1)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3만원→5만원)
-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의회에서도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윤리 심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대상이 되는 위반행

위가 분명하지 않았음.

- 따라서 안 제8조의2(징계 등)를 신설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별표2와 같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적 질서를 확립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또는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중전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행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당초 조례 제4조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4조에서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고문의 연임제한 횟수를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인물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와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시각과 정책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위촉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변경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및 심사사항 확대(안 제4조)
- 2) 공무국외출장 출국 45일 전 계획서 홈페이지 게시(안 제5조)
- 3) 계획서에 대한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안 제6조)
- 4) 의결 후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다시 회의를 거쳐 재의결(안 제9조)

- 5)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출장의 적법·적정성 심의 및 출장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13조)
- 6) 출장경비 이외 비용지출 관련 사항 규정(안 제14조)
- 7)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243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외유성 출장, 국외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함.
- 본 전부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의원비율을 지방의원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제7항에서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사 원칙으로 규정함.
-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홈페이지 게시, 주민의견 수렴기간 명시, 심사위원회 제출 기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등을 규정함.

- 조례안 제13조에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기한과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함.
- 조례안 제14조에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자가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음.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내실있게 반영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거창군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또는 경남시군회의의장협의회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거창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거창
군의회 의원 윤리심사에 공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86조 제5항 삭제
- 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 2)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규칙 개정안은 거창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제척사유만 규정하고 있는 제8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86조의2 안을 신설함으로써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모두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음.
- 이번 거창군의회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윤리심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신설되는 제86조의2 조문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따라 무리 없이 규정되었으므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던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함.

나. 주요내용

- 1)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9.10.)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전략담당관 (의원발의)	1
2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의원발의)	8
3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2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16
5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20
6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광진흥과	27
7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광진흥과	34
8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41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 무 과	47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 무 과	50
11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53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3)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4)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안 제5조)

- 5)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6조)
- 6) 의회 보고(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적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제명에서 거창군을 명시하여 조례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해 기획부터 사전검토, 추진,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임.
-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내용에 목적 달성이 되도록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안 제7조에 의회보고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 시 해석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 우리 군은 민선 7기 이후 7년간 총 361건의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 5,896억원 중 1,961억원의 군 재정을 투입하였음.
- 이는 연평균 50여 건의 공모사업을 시행 중인 셈인데 재정 자립도(2024년 기준 9.10%)가 전국 평균(23.98%)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하지만, 이제는 공모 실적을 따지는 시대를 넘어 공모 효과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 이어야 하나,
-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 조성 후 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가 볼 보듯 뻔히 지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 천편일률적인 공모사업 기준에 끌어 맞추다 보니 지자체가 본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 침해 등의 역효과가 발생함.
- 덧붙여,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이미 선정된 사업의 매칭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국·도비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성급하게 신청하고 추진하지는 않는지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예산 편성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는 「지방자

치법」상 의회의 권한을 고려해 볼 때 군수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 국·도·군비 매칭으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전 보고를 통해 의회가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음.
- 참고로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에 대해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부.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이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거나,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도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군과 협의하여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군민 기본 소득 지원에 앞서 기본소득의 타당성 및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창군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3조)
- 2) 사업 지원 및 범위 (안 제4조)
- 3) 표창수여 근거 마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는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
- 이에 힘입어 각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시행 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삶. 농촌을 식민지 삼아 도시가 비대해지는 사이, 농민과 도시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계속 커져 농어촌의 평균 소득은 도시에 비해 60%가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임.
-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운동본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진군에서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4.)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 2025년 5월 8일에는 농어촌기본소득 남해운동본부가 출범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와 확산을 위해 전 군민 지지 서명운동과 조례 제정 등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 시민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전라북도는 2025년 8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며, 전북도 내 8개 군에 각 1개 면씩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될 예정임.
-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도 이미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거창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
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주차장 및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차장 이용료 면제(안 제1조~제4조)

- 가) 대상: 거창군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나) 시설: 수송대, 향노화힐링랜드,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2) 시설 이용료 30퍼센트 감경(안 제3조~제5조)

- 가) 대상: 거창군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나) 시설: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공통된 사항에 대해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그 내용은 거창군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와 시설 이용료 30퍼센트 감경하는 것임.
-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단순 개정 사항으로 일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상위법령에 어긋남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3 제1호더목 중 “사람”을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을 “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중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제3조(「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면제
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

제4조(「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다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감면율 100분의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100분의 30

제5조(「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을 “시설 사용료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5. 거창군에 <u>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u>100분의 30</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8. 2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재훈]

가. 제안이유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1) 한시기구를 신설함(안 제29조)

가) 분장사무: 도민체전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나) 존속기한: 2028. 12. 31.

2) 한시정원을 신설함(안 제30조, 별표 5)

가) 한시정원 총수: 일반직 11명

(1) 5급 중 1명

(2) 6급 이하 중 10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 조례안은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경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제5항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개군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결정은 아직 미정임
-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타시·군의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 2026년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함안군과 창녕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각 6급이하 3명을 한시정원으로 2026년 연말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창군의 경우 2025년 9월 단독으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만, 6급 1명(겸임), 직원 4명 등으로 도민체전추진단TF팀을 20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가평군의 경우에도 2025년과 2026년도에 단독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만, 5급 1명만 2026년 연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면서, 도종합체진추진단에 5급 1명, 6급 이하 4명으로 구성함.
- 한시기구 설치에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확대함(안 제3조)
 - 가) 4급 이상 ⇒ 5급 이상
- 2) 포상금 환수 규정 정비함(안 제8조)
- 3)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정비함(안 제10조)
 - 가) 위원수 확대: 5명 ⇒ 6명
 - 나) 민간 전문가 1명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군민의 이해를 돕고,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2025년 6월 20일 거창군 공고 제2025-900호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과정에서 발의된 해당 조항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음.

입법예고	심의안건(신설)
제3조제2항 개정없음	<p>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u>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u> <u>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u> <u>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u>
--	--

- 2024년 12월 법제처에서 발행한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검토안에는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입법예고 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자구를 수정하는 간단한 변경사항이 아니며,
- 덧붙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단순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급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조례 제3조제2항의 상당 부분이 신설된 경우는 조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할 것임.
-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이 타당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환수 규정이 없었음.
- 개정안 제8조에서 「공공재정 부정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자 가산에 대한 근거를 확보함.
- 개정안 제10조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향후에는 당초 입법예고 된 개정내용의 취지나 목적이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례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조문이 신설되거나 상당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법”을 “법”으로 “에 따라”를 “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법”을 “법”으로 “에 따라”를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으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
 - 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를 “제3조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체납액 중 1년차”를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체납액 중 2년차의”를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를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

로 하고 제4호(중전 제 3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 민원소통과장
3. 재무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군수가 위촉하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8. 2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가. 제안이유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행으로 거창군 관광 및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2) 방문의 해 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3)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정함(안 제5조~제12조)
- 4)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함(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거창방문의 해를 지정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므로, 제명에 ‘거창군’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조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나,
- 거창방문의 해를 2026년도로 한정한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을 위하여 2년간 총 7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의 기준에 맞게 반영되었으며,
- 위원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인 입법 사례에 맞게 규정되었음.

- 또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과 효력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거창군 2024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2,981,143명으로 인구(59,244명)의 약 50배에 해당하나, 2025년도에는 열린음악회와 전국노래자랑 유치로 더 많은 방문객이 거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조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거창방문의 해는 거창창포원의 가치와 역할을 부각하여 국가정원으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구축된 완성형 관광도시 거창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 2026년 한 해 동안 거창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거창군,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업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며, 기존 관광정책과는 달리 차별화되고 다변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도내 방문의 해 추진현황 >

- 2022년 : 남해군 / 2023년 : 밀양시 / 2023년~2024년 : 의령군
- 2024년 : 김해시 / 2025년 : 사천시, 산청군 / 2026년(예정) : 양산시, 거창군

-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적법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거창방문의 해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문의 해 행사 운영
2.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개발
3. 컨설팅, 회의 및 교육
4. 지역관광자원 환경개선, 군민의식 고취 등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문의 해 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물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2.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숙박 및 체험 비용
 - 나. 회의, 교육 등 참석 실비(實費)

제5조(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등

2. 홍보활동 지원
3. 군민참여 활성화
4.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행복농촌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관광, 문화,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 라. 방문의 해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 ① 위원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8. 2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2) 지원계획의 수립, 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3) 사무의 위탁, 자문,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조례안 제2조에 치유자원과 치유산업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음.
- 치유산업은 치유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영역이 넓다 보니 소관부처도 다양함.
-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치유관광이나 웰니스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의학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음.
- 네덜란드 등 유럽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업부서 중심의 케어팜(Care farm)을 통해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 교육서비스, 사회적재활 등에 사용해 오고 있음.
- 2025년 7월말 기준 거창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9,547명으로 전체 인구 59,268명 중 32.9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음.
- 초고령 사회는 의료비 증가, 경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가속, 건강수명 감소 및 건강 형평성 지역 간 격차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런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치유산업 육성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 및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치유산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치유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임.
- 우리군은 25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68호)로부터 당초 ‘거창 향노화힐링특구’에서 ‘거창 치유산업 특구’로의 계획변경안이 최종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치유산업 육성에 한발 앞서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치유산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母法 시행 후 법적 근거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나,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 결여뿐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창 치유산업특구 >

■ **특구개요**

- 위 치 :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등 501필지
- 면 적 : 2,916,973m²
- 운영기간 : 2024. ~ 2026.(3년)
- 사 업 비 : 302억원(국 140, 도 43, 군 116, 자 3)

■ **사업내용**

- 내 용 :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세부사업	비고
산림치유	감악산 치유공간 조성 / 산림.명상치유 콘텐츠 운영	
농촌치유	치유특화마을 조성 / 치유농장 조성.운영 / 농촌치유 인력육성	
치유관광	웰니스 온천단지 시설개선 / 거창 치유명상 축제 / 거창한 치유브랜드 홍보	

■ **규제특례 : 3개 특례**

-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자원”이란 거창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산림치유·치유농업 및 치유관광 등의 자원을 말한다.
2. “치유산업”이란 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치유자원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그 밖에 치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나. 기반 조성 및 기존 시설의 개선
 - 다. 행사 및 축제
 - 라.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역의 특화된 치유산업 서비스 제공
3. 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5.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산업기반 조성
6. 치유산업특구(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지원 및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치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치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문) ① 군수는 치유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자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
2. 치유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
3. 그 밖에 치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민간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그 밖에 치유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치유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산업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수범자인 군민이 그 내용을 더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금연구역의 지정·절차·변경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2) 금연환경 조성을 정함(안 제4조)
- 3) 금연지도원 운영, 직무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4)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7조)
(현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3만원 ⇒ (변경) 5만원
- 5)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지도원 운영, 과태료 부과 등 포괄적인 목적이 금연환경 조성으로 보여지며, 제명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잘 표현함.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원수 또한 ‘10명 이내’로 명시하여 조례 운영에 있어 착오를 방지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에 금연지도원 연임 규정을 둠에 따라 부칙에서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였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2조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됨.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에서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행강제력을 높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 부칙 제2조에서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유사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군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거창군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금연환경 조성)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교육
 2. 금연교육을 하는 단체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는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 가. 금연상담
 - 나.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 제공
 - 다. 찾아가는 금연교육 등
 4. 금연 홍보관 설치·운영
 5.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홍보요원 운영.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 등에서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 지도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8. 2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나. 출연금액: 4,063천원

1) 2026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출연금	4,796	4,063	4,063	-	-	4,063	

※ 산출기초 : '24년 결산 보통세 40,627,030천원 × 1.0/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법 제152조제3항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24년 결산 보통세 40,627,030천원의 1.0%인 4,063천원을 2026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8. 2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8.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집중호우로 관내 다수 토지가 매몰·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 발생으로 생활 기반이 훼손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생계안정과 재산 회복 지원 및 인근 지자체 피해 주민과의 세제지원 형평성 확보

나. 주요내용

1) 피해개요

가) 피해지역: 남상면, 신원면

나) 피해유형: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부동산) 피해

다) 피해현황: 농경지 197필지(매몰 143, 유실 49, 매몰·유실 5)

2) 감면사항

- 1) 감면세목: 재산세(토지)
- 2) 감면대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매몰·유실 토지
- 3) 감 면 율 : 100%
- 4) 감면 추계액: 1,752천원
 ※ NDMS에 입력된 피해 토지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상 2025년 예상세액 산출
- 5) 감면기간: 피해 발생 연도분 재산세(당해연도 1회 한정)
- 6) 감면방법: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추가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군이 2025년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농지의 유실·매몰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그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명확하므로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개정(2023.8.3.) 이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 위탁참여인원 : 7명(예정)
- 3) 위탁사무

- 가)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 중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업무 수행
- 나)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다)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4)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5) 위탁방법 :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특수교육 과정에 있는 미취업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들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과 취업에 도달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 장애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시행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 또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장애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수탁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므로 기회의 균등함을 실현할 수 있으며,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에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5.9.10.)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2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9
4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5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6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8
7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33
8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8
9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3
10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8
11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52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8. 22.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기후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폭염·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다.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폭염·한파 취약계층 및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사항
(안 제8조~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8. 18. ~ 2025. 08.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음. 제4조제1항에는 재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및제7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마련토록 되어 있어 제4조의 종합대책 수립과 제5조 예방활동, 제6조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9조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8. 22.

나. 발 의 자 :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준규 의원)

- 건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재의 규정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이나, 이를 모른 채 설치한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서 군민을 구제하고 양성화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6호 신설)

- 나.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부지 내에 설치한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7호 신설)
- 다.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로 감면함 (안 제42조의3제4항 신설)(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80조제1항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제115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3층이하(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을 받은 경우로 한정) 건축물에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과 어린이집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개정함으로써 건축신고를 간소화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기존 무허가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허가

비가림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건축물 추인을 유도하고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 시가표준액(산출)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구조 용도 위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m ²)	×	증축 (기초공사)	×	가감산 특례
130,000 × 면적	=	840,000	×	경량철골구조 65 단독주택 91 150초과-200 96	×	2015년 0.55	×	없음	×	-15	×	무벽 -40

○ 산출식

구분	산출식	이행강제금	비고
위반사항 (예시)	위 치: 거창읍 상림리 121-20번지 위반내용: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위반면적: 100m ² 구 조: 경량철골구조 설치년도: 2015년(사용승인일로부터10년) 시가표준액: 130,000원		
현행법	130,000원 × 100m ² × 0.5 × 0.6 × 1/2	1,950,000원	≈ 15배
의원 발의안	130,000원 × 100m ² × 0.01	130,000원	

- 개정안을 보면 제26조 제2항 제6호와 제7호의 신설을 통해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시켰으며 제42조의3 4항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1로 부과하도록 특례를 두어 감면하고 있음.

- 제26조 제2항 제6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서 사용 승인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가중평균 수평면이 1.8m 이하인 경사지붕 또는 높이가 1.5m 이하인 평지붕,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 처마 빗물받이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받이 시설 포함을 규정하면서 각목을 모두 충족 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건물 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방수작업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아 지붕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상 건축물의 증축에는 정식 허가와 함께 구조안전검사, 설계비 등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대부분 위법하게 설치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임.
- 또한 불법건축물의 경우 대출, 매매, 상가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되는 유사 민원을 고려해, 미관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소규모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추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한 대책이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8. 22.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필수농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 사항(안 제6조~제13조)
- 라. 중복지원 제한(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4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8. 11. ~ 2025. 0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필수 농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농업인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생산활동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통계청의 주요농산물의 생산비를 보면 2022년 대비 2024년의 증감률은 벼 3.3%, 마늘 12.8%, 양파 4%, 고추 22%, 콩 21.5%로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음

「농산물생산비 통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2년 대비 24년	
				증감	증감률
10a당 논벼 생산비	854,461	875,360	882,310	27,849	3.3
10a당 마늘 생산비	3,777,882	4,204,188	4,262,012	484,130	12.8
10a당 양파 생산비	2,941,418	3,113,089	3,060,776	119,358	4.0
10a당 고추 생산비	4,323,916	4,801,854	5,275,395	951,479	22.0
10a당 콩 생산비	746,640	888,968	907,177	160,537	21.5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필수농자재 지원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을,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에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에게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액은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원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품목,

대상자,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지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항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있음.

- 전국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충남 공주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2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농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 바,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거창군에서는 여러 부분에 농자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지원사업과 상호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10조·제13조)
- 나.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4항)

- 1)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위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5.~6.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제1조에서 법 인용조항을 정비했으며 제4조에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조례에서 설치조항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임.

- 제4조에 신설되는 2호, 3호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4호는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 제14조제4항은 법 제1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①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건물의 신축)

1. 제안이유

- 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복합시설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의 장 마련
- 나.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창창포원 일원에 조성하여 대표관광지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 친환경 농식품 판로 극대화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2)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년간)

4) 사업량 : 대지면적 13,063.6㎡, 연면적 3,558.26㎡

5)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가공장, 체험시설 등 조성

6) 사업비 : 18,000백만원 (국 9,000, 도 2,700, 군 6,300)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형식)	연면적				
취득 (신축)	건물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건물 1동	3,558.26	14,492,580	2027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거창군

※ 주요시설

구 분	용 도	연면적(㎡)	비고
계		3,558.26	
유기농 레스토랑	제2종근린생활시설	447.11	
유기농 카페	제2종근린생활시설	520.37	
유기농 가공실 및 가공체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291.16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384.40	
씨앗도서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93.70	
유기농 식문화 교육장/진로체험교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267.33	
사무실/회의실/창업활성화센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168.32	
회 랑	-	779.03	
공용 및 기타	-	606.84	

다. 추진경과

- 1) 2020. 11. : 사업부지 공유재산 심의
- 2) 2021. 4. : 거창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월안 의결)
- 3) 2022. 3. : 공모사업 선정
- 4) 2022. 7.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단계)
- 5) 2022. 11. : 거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6) 2023. 8. :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7) 2023. 10. :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 8) 2024.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통보(경남 공공건축지원센터)
- 9) 2024. 7. : 거창군 공공건축심의 완료
- 10) 2024. 10. : 설계용역 착수
- 11) 2025. 3. : 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 12) 2025. 4. : 제로에너지예비인증 완료
- 13) 2025. 5. : 녹색건축예비인증 완료
- 14) 2025. 5. : 건축허가 신청(거창군 도시건축과)
- 15) 2025. 6. : 실시설계 및 운영방안 용역 합동보고회
- 16) 2025. 7. : 설계경제성(VE) 검토 완료

라. 향후계획

- 1) 2025. 8.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열람 의견청취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 2025. 8.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완료
- 3) 2025. 9. 2. ~ 9. 1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
- 4) 2025. 10.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 5) 2025. 10. : 군계획위원회 개최
- 6) 2025. 11. : 경남도 관련부서 협의(농정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 7) 2025. 1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8) 2026. 1. : 거창군 건축협의 완료
- 9) 2026. 3.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 10) 2026. 6. : 공사 착공
- 11) 2027.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1)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의 상생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제고
- 2) 거창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3.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1] 참조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②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 4도3촌 체류시설 조성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신규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민의 4도3촌 라이프 확산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여가·영농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등 6필지
※ 한기리 452-3, 915, 915-2, 923-1, 923-13, 1043-4
- 2) 사업기간 : 2025. 6. ~ 2027. 12. / 3년간
- 3) 대상지 면적 : 14,562㎡(정비면적 : 9,603.9㎡)
- 4) 사업내용 : 체류시설 총18호 조성(16호: 각호 면적 33㎡, 2호: 각호 면적 40㎡)
공동시설 리모델링, 부대시설 조성 등

5) 사업비 : **3,000백만원**(국 1,500, 도 450, 군 1,050)

※ 예산배정 :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6) 주요내용 : 도시민의 농촌 체류·영농체험 시설조성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1)기준가격	취득 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형식)	면적				
취득	건축물	웅양면 한기리 915	건물 18동	608	2,129,700	2026 ~ 2027	단독주택 18호 신축 (33m ² 16호, 40m ² 2호)	신축

※ 1)기준가격 : 33m²(115,931천원/호), 40m²(137,400천원/호)

다. 추진경과

- 1) '25. 3. :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 '25. 5. : 국비(150백만원)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 3) '25. 6.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라. 향후계획

- 1) '25. 8. : 공유재산 심의
- 2) '25. 8. ~ 11.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3) '26. 3. ~ '27. 11.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1) 체류시설 조성을 통해 우리군 생활·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증대 및 경제활성화
- 2) 도시민에게 농촌 체류 및 영농체험 기회 제공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도모

3.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건물의 신축) 건은

-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거창군이 선정되어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에 180억원의 사업비로 유기농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유기농복합단지 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창창포원 일원에 창포원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홍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위한 우수한 입지로 보이며 또한 거창창포원에 부족한 먹거리 인프라도 확충될 것으로 사료됨.
- 계획된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유기농 레스토랑, 유기농 카페, 유기농가공실 및 가공체험장,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씨앗도서관, 유기농 식문화 교육장/진로체험교실, 사무실/회의실/창업활성화센터, 회랑, 공용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으며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단계) 중이며 조건부 사항은 인접한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과의 차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두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상호간 보완하는 내용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비는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6,300)으로 현재 연차별 배정계획에 의해 확보중이며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거창창포원은 하천부지로 인프라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의 연계시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현 부지 외에는 창포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고 유기농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여건으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기농복합단지의 건립은 타당하다 할 것임.

㉒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 4도3촌 체류시설 조성의 건은

-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2025년 3월 선정되어 3,000백만원(국 1,500, 도 450, 군 1,050)의 사업비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체류시설 총18호의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 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여 농촌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본 공모사업은 하성단노을영농조합의 건의로 시작되었고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는 폐교된 하성초등학교를 주민 스스로 정부의 문화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입지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 농촌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시·농촌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도시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이 사업은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계획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 가. 우리 군은 친환경 농식품 판로 극대화과 거창창포원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교육을 하나로 연계한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유기농복합단지 건축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을 확장하는 『거창창포원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 2)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 일원
- 3) 사업기간 : 2022. ~ 2027. (6년)
-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063.6m² / 건물연면적 : 3,558.26m²
(지상1층)
- 5) 사업비 :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6,300)

나.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변경개요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계획관리지역 증 4,864.3m², 농림지역 감 4,864.3m²
- 2) 유원지 확장 : 기정 A=43,136.0m² 변경 A=48,000.3m²
(증 4,864.3m²)

※ 편입 필지 : 남상면 월평리 2265 등 6필지(4864.3m²)

3)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 (시설신설) 편익시설(유기농복합단지) 신설
- (시설폐지) 편익시설(에코힐링센터), 휴양시설(글램핑장) 폐지
- (명칭변경) 특수시설(자연에너지학습관 → 치유센터) 명칭변경

다. 결정사유

- 1) 2023년 11월 유기농복합단지를 포함한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유원지)이 결정 변경되었으나, 유기농복합단지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확장이 필요
※ 건축 층수 및 건축면적 : (당초) 3층, 1,800m² → (변경) 단층, 3,588.26m²
- 2) 확장되는 구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시설결정 변경(확장)을 동시

에 추진하고자 함

※ 농림지역은 유원지 시설 불가, 농업진흥지역(4,684.3m²) 해제 필요
라. 그간 추진사항

- 1) 2022. 03. :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 선정
- 2) 2023. 10. : 유기농복합단지 기본계획 승인
- 3) 2023. 11. :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513호, 2023.11.16.)
- 4) 2023. 11. : 거창창포원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2023.11.30.)
- 5) 2024. 07.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 6) 2024. 09. : 제안설계 공모 선정 및 설계 착수
- 7) 2025. 03.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요청(도시건축과)
- 8) 2025. 07. :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미래농업과 → 도시건축과)
- 9) 2025. 08.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마. 향후 추진계획

- 1) 2025. 09. : 거창군 계획위원회 심의
- 2) 2025. 10.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 3) 2025. 1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농정위원회 심의
- 4) 2026. 03.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5) 2026. 06. ~ 2027. 12. : 공사 시행 및 유기농복합단지 운영 준비

4. 참고사항

가. 편입토지 조서 : 붙임 1

나. 거창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안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거창군이 경남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 일원에 먹거리, 편의시설, 체험프로그램,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포원에 부족했던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유기농 복합단지 구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11월 유기농복합단지를 포함한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유원지)이 결정변경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음.
- 거창창포원 군관리지역(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변경개요를 보면 농림지역 6필지 4,864.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 금회 결정(변경)된 계획관리지역을 유원지 시설 결정을 통하여 유원지로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
- 유원지 확장은 당초 유기농복합단지를 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방문객 동선 효율성 제고, 중앙 잔디광장 배치를 통한 개방감 극대화, 쾌적한 시야 확보,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제고를 위해 계획이 단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구역을 확장하려는 것임.

-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은 기존의 휴양시설용지인 글램핑장과 편익시설용지인 에코힐링센터를 폐지하여 편익시설용지 유기농복합단지를 신설하고 자연에너지학습관이 치유센터로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시설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
- 거창창포원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건축계획 변경도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의견 채택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8. 2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1) 시설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2)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60, 정장
공원 부지 내

3) 규 모 : 2,833m²

- 천적생태과학관 : 1,040m²(지하 1층, 지상 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과학관 시설물, 전시시설, 주변 조경 유지 및 관리
 - 천적곤충 교육 · 체험 · 전시 · 홍보 기획 및 운영
 - 천적곤충 표본 제작 및 천적 연구
 - 천적 생산 및 농가 공급, 기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2)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3) 위탁예산 : 연간 240,000천원 정도(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미포함)

※ 2023년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상승률 반영
하여 재산정 예정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유사시설 경력, 운영 능력 등 전반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추진사항

- 1) 2011. 10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
- 2) 2012. 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3) 2013. 9월 : 천적곤충 생산 · 공급 개시
- 4) 2016.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5) 2019. 2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전시개선사업(리모델링) 준공
- 6) 2022. 10월 :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 도입

- 7) 2023. 12월 : 거창군 협력 농촌진흥청 ‘천적 관계도’ 책자 발간
 - 8) 2024. : 신화속의 곤충전 등 특별전시회 개최(5회)
 - 9) 2025. 8월 : 국립농업박물관-거창천적생태과학관 협력전시회 개최
- 라. 향후 추진일정
- 1) 2025. 9월 : 민간위탁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 2025. 10월 ~ 11월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3) 2025. 12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 4) 2025. 12월 : 인계 · 인수 및 고시

4. 동의(승인)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나. 동의(승인내용)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

5. 참고사항

- 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1
- 나. 운영원가 산출내역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 현 수탁기관인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는 2023년~2025년

까지 재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번 동의안에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위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은 곤충과 관련된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를 하며, 천적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천적을 이용한 체험, 탐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충방제용 천적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수탁자 자격을 보면 과학관(유사시설) 구축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천적 연구업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기획, 운영하며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로 되어 있으나 수탁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탁자 모집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거창생태과학관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간 민간 위탁 운영에 의한 방문객 수, 천적공급량 등의 성과를 살펴볼 때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8. 토론요지 : 없음

9. 수정안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8. 2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가. 지애플(G-APPLE)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나.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안정성 유지 등 거창사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1) 시설명 : 지애플(G-APPLE)

2) 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3) 규 모 : 999.12m²(1층 535.13m², 2층 463.99m²), 철골구조

구 분	면적(m ²)	용 도	비 고
합계	999.12	-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 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옥외휴식공간 등	

4) 수탁자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운영인력 : 8명(대표 1, 직원 7)

5)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2년 2개월)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6) 위탁사무 : 지애플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세부사업 : 사과관련 가공(음료·빵·식사), 판매, 체험 운영 등

7) 위탁지원금 : 없음

- 2023년 : 20,000천원 / 2024년 : 26,697천원 / 2025년 : 0원

-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이며, 운영 초과수익 발생 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배분율 등 세부사항은 위탁기간 종료 후 심의 후 결정 가능함)

※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22. 8.)」에 따른 위탁운영비 산출 : 운영초기(2년) 적자 예상, 3년차 부터 흑자 운영 예상

나. 그간 추진현황 및 계획

1) 2022. 10. : 지애플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2) 2023. 1. ~ 8. : 위탁운영 실시(농업회사법인영클팜)

3) 2023. 8. ~ 9. :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4) 2023. 10. 26. ~ 현재 : 위탁운영 실시(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

5) 2024. 2.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전환

- 6) 2024. 7. : 식사료 신메뉴 개발(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 7) 2025. 8. 6. :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 평가점수 : 84.6점(정량평가 25점 + 정성평가 59.6점)
- 8) 2025. 9.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9) 2025. 10. ~ 12. : 계약철차 진행

4. 참고사항

- 가. 지애플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1, 2
- 나. 관계법령 : 붙임 3
 - 1) 「공유재산법」 제27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9조
 - 4)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지애플(G-APPLE)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 수탁기관인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에 재계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지애플(G-APPLE)은 2023년 1월부터 3년간 농업회사법인 영클팜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수탁기관이 2023년 6월 28일 G-애플 위·수탁 협약 해지를 요청함으로써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를 통하여 2023년 10월부터 현 수탁기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 현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실시한 이후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고 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등 식사류 신메뉴를 개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붙임1에 나와 있듯이 매출액과 방문객이 증가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위탁지원금은 2023년 20,000천원, 2024년 26,697천원을 지원 하였으나 2025년에는 현재 지원금이 없으며 이번 동의안에 위탁운영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계약하여 위탁 지원금은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계약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84.6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거창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지구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37억 원을 확보해 지애플이 준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운영 실태가 거창사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거창사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요구되며 지애플 운영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 추가로 발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8. 2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소득과장)

가.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세부내용 [붙임3]

연번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시설내용	비 고
		소재지	면적(m ²)		
합계			45,356.2		
1	토지	고제면 봉계리 525-1	19,874	사과원	
2		고제면 봉계리 521	1,379	사과원	
3		고제면 봉계리 522	1,534	사과원	
4		고제면 봉계리 525-3	358	창고용지	
5		고제면 봉계리 524-2	2,321	자연학습장	
6		고제면 봉계리 산 157-6	17,183	산나물체험장	
7		고제면 봉계리 520	251	산나물체험장	
8		고제면 봉계리 526-2	2,188	생태소류지	
9	건물	고제면 봉계리 525-2	207	관리동	
10		고제면 봉계리 525-3	61.2	창고	내부 저온창고 10m ²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대상 업무

- 위탁 재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사과 다축과원 조성 및 시범포 운영 등

2)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4년 7개월)

3) 재계약 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4) 재계약 기준

- 수탁자의 적정성,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
- 자체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추진경과

1) 2021. 5. 31. ~ 2025. 12. 31. :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2) 2021. ~ 2024.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연 1회)

3) 2022. ~ 2024. : 다축과원 조성(1.35ha) ※ 후지(2축) 0.6ha,
감홍(구요) 0.75ha

4) 2025. 8. :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 평가점수 : 80.75점(정량평가 24.75점 + 정성평가 56점)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라. 향후 추진일정

1) 2025. 10. ~ 12. 계약절차 진행

2) 2026. 1. ~ : 위탁업무 개시

4. 참고사항

가. 추진계획 : [붙임1]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2]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 [붙임4]

라. 관계법령 : [붙임5]

1)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인 고제면 주민자치회에 재계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계약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대부료 기준에 의거 연간 200만 원 내외의 임대료와 위탁대상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수탁자가 다축 과원 조성비용의 20%를 자부담하고 다축과원 시범포 운영, 과원 운영, 시설 유지관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과 과원은 조성 후 결실까지 묘목에 따라 최소 2년~5년이 소요 되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없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계약을 통해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현 수탁자가 보조사업 조성비용의 20%를 자부담하여 다축과원을 추진한 바 사과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고제면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주민자치회가 수탁하여 다축 과원 시범포를 운영함으로써 사과주산지인 고제에 다축과원 보급을 확산하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을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의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도 크다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8. 2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5.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력과 선수육성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학교 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을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나. 위탁내용

- 1) 엘리트운동부 대회참가비, 훈련비, 인건비 등 지원
- 2) 대상종목

- 배드민턴 : 3개교(창남초, 거창중, 거창승강기교)
- 역 도 : 2개교(대성중, 대성일고)
- 사 격 : 6개교(혜성여중, 거창여중, 대성중, 거창중, 아림고, 중앙고)
- 육 상 : 4개교(거창중, 거창여중, 아림고, 거창대)
- 축 구 : U-18 축구팀 2개교(중앙고, 대성일고)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4. 추진일정

- 가. 거창군 의회 일반의안 제출 : 2025. 8.
- 나. 거창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9.
- 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 : 2025. 9.
-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0.
- 마.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5. 12.

5 참고사항

- 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 나. 관계법령 : 붙임2
 - 1)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등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거창군체육회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은 계속해서 거창군체육회가 수탁하여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거창군 체육회와 수의계약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체육회는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 점
 - 나. 거창군체육회는 전문적인 지도력과 선수육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코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
 - 다. 거창군체육회는 코치에 대한 인력관리 및 대회참가, 훈련비정산관리를 하는 전문 행정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점
 - 라. 엘리트 육성 종목은 모두 거창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어 초,공,고 선수발굴 및 육성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점

마. 현재 엘리트운동부 선수들은 모두 도민체전 고등부에서 활약하고 있고, 전국단위 대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 거창군 체육회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점 등에 있어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됨.

- 다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된 점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정을 어긴 사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 수탁업체인 거창군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이는 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없이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8 토론요지 : 없음

9 수정안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8. 2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8. 2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9. 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계약이 2025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다.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웬스시설
12면	6면 (전천후)	6면 (옥외)	1층 140.55m ²	타워조명 실내투광등	7,829m ²



라. 위탁기간 : 2026. 1. 1.~ 2028.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바. 수탁자격 :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

4. 추진일정

- 가.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5년 8월
- 나. 수탁자 선정 관련 공개모집 : 2025년 10월
- 다. 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11월
- 라. 위수탁계약 체결 : 2025년 12월
- 마. 위탁계약 운영 : 2026년 1월 ~

5.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1
- 나. 관계법령 : 붙임2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관리위탁)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수탁 자격은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위탁료는 현재 용역을 통해 산정기로 계획되어 있음.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은 현재 거창군테니스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인해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투명성도 확보되는 만큼 본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8 토론요지 : 없음

9 수정안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거창군의회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을 포함한 ‘거창 권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등 필수의료 전반에 있어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나 암 환자, 심지어 재활 환자들마저 거창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대도시로 원정 의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며, 산부인과 또한 위기인 상황입니다.

응급 의료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 본 권역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나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2021년 발표된 인구 1,000명당 중증응급질환 사망자 수는 128.2명으로, 상주권역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3대 중증 질환자 발생률 역시 경상남도 평균(10만 명당 548명)을 훨씬 상회하는 99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1년 기준 거창군 57.4명, 합천군 62.8명인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2019년 거창 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상주·통영 적십자병원의 이전·신축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2021년 보건복지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등 관련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어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 없이는 국비 확보 등 향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는 지역과 인구 수에 따라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이번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거창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의료복지타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대도시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창형 행정의료복지타운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인구 수와 관계없이 의료 복지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진료권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거창군의회